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Q&A 자료

BK21 FOUR (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2020. 2.

교 육 부
(대학학사제도과)

목 차

I. 총괄

가. 지원 분야

1. 전국/지역을 구분하여 신청 및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지역 공모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학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 본교와 분교는 별도로 교육연구단(팀)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교는 전국, 지역 중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1
3. 타 부처의 대학원 대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부(과)는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나요? 1
4. 교육연구단(팀)과 4단계 BK21 사업 지원대학원생 간 조교·연구원 업무 관련 협약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해야 합니까? 1

나. 신청 요건

1. 사업 신청일 이전에 대학원 학과(부)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까? 2
2.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2
3. 박사학위과정 없이, 석사학위과정만 운영 중인 학과(부)도 4단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2
4. 교육연구단(팀) 참여 교수 기준은 무엇이며, 대학 내 연구전담교수, 기금 교수도 포함됩니까? 2
5. 교육연구단(팀) 참여교수가 사업기간 동안 교체될 수 있습니까? 또한, 사업기간 내 정년퇴직 예정자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3
6. 휴직이나 연구년 중인 교수도 교육연구단(팀)에 참여교수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3

- 7.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는 반드시 전임발령이 필요합니까? 3
- 8. 4단계 BK21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한(연구과제 책임자 3개, 공동연구자 5개(3책5공))에 포함됩니까? 3
- 9. 교육연구단(팀)장을 겸할 수 없는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4
- 10. 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4
- 11. 교원 소속 변경 및 신입교원 임용일자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4

다. 지원 내용

- 1. 4단계 사업 참여 대학원생 수 및 지원 대학원생 수는 분야별로 어떻게 결정 됩니까? 5
- 2. 교육연구단(팀) 지원대학원생의 석·박사과정생 구성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5
- 3. 간접비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급할 예정 입니까? 5
- 4. 4단계 사업에서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계약교수)에 대한 채용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5
- 5. 이미 정부 타 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4단계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5
- 6. 참여 대학원생 중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석·박사 구분 기준은 무엇입 니까? 5
- 7. 학·석사 연계과정에 참여 중인 학부생도 참여 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까? 6
- 8. 수료생이 교육연구단(팀)의 참여 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까? 6

라. 선정 평가

1. 참여교수의 연구업적물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니까? 6
2. 대표 연구업적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6
3.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
4. 참여교수 전체 논문 평가 관련, “참여교수 1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 합”과 “논문 1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란 어떻게 산출합니까? 7
5. 교수 연구업적 평가 중 “논문 편수 환산 기준” 및 “보정 영향력 지수 (IF)”는 BK21 플러스사업과 다릅니까? 7
6. 전국 공모와 지역 공모는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하게 되나요? 9
7. 신입교수의 연구실적은 어떻게 인정되니까? 9
8.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은 어떠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까? 9
9.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을 받은 경우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9
10.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가 정량지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가요? 9

마. 기타

1. 3단계 사업 수혜학과가 4단계 사업 신청을 위해 3단계 사업 종료 이전 학과를 개편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9

II. 미래인재 양성사업

가. 지원 분야

1. 한 학과(부) 내에서 세부사업 유형 간 또는 세부 분야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10
2. 3단계 사업에서와 같이 한 학과(부)에서 2개의 교육연구팀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한 대학에서는 세부분야 별로 1개의 팀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10
3.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1

나. 신청 요건

1.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부)만 신청단위가 됩니까? 전공 단위는 신청할 수 없습니까? 12
2. 의·치·한의학 분야에 임상교수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12
3.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지도교수가 임상교수인 학생의 참여에 비율 제한이 있습니까? 12
4. 교육연구단 구성 시 신입교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까? 12

다. 지원 내용

1. 교육연구단(팀) 국고지원비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합니까? 13

라. 선정 평가

1. 미래인재 양성사업 인문사회 분야 및 교육연구팀 전 분야의 경우, 세부 분야 및 학문 분야는 예시로, 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 평가패널 구성하는 방식(bottom-up)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패널이 구성되는가요? 14
2. 학과의 일부 교수들만 참여하는 교육연구팀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4
3. 의·치·한의학 분야 임상교수도 선정평가 시 평가를 받나요? 14
4. 교육연구팀의 경우에도 대면평가가 존재하나요? 14

III. 혁신인재 양성사업

가. 지원 분야

1. 한 학과(부) 내에서 세부사업 유형 간 또는 세부 분야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15

2. 산업·사회 문제 해결분야의 경우, 한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는 교육연구단 수는 대학원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때 대학원 재학생 수 기준은 무엇인지? 15
3. 신산업분야의 “인공지능”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한정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의미합니까? 16
4. 신산업분야의 “바이오헬스/혁신신약” 분야와 “맞춤형헬스케어” 분야는 각각 어떤 분야를 의미하며, 두 분야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16

나. 신청 요건

1.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부)만 신청단위가 됩니까? 전공 단위는 신청할 수 없습니까? 16
2. 혁신인재 양성사업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16
3. 교육연구단 구성 시 신입교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까? 17
4. 융합전공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7
5. 대학 간 연합 교육연구단의 경우 지역의 제한은 없나요? 또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영역에서의 가점이 부여되나요? 17
6. 산업·사회문제 분야의 교육연구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각 세부 분야 (인문사회분야융복합, 과학기술분야융복합, 인문사회과학기술융복합)는 어떻게 다릅니까? 17
7.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에도 임상교수 참여 제한이 있나요? 18

다. 지원 내용

1. 교육연구단 국고지원비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합니까? 18
2. 대학원 재학생이 없는 신설 학과 혹은 융합전공 등의 경우, 연차가 증가하면서 대학원생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연구장학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설학과 등의 사업 지원 예산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19

라. 선정 평가

1. 혁신인재 양성사업 산업·사회문제 분야의 경우 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 평가패널 구성하는 방식(bottom-up)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패널이 구성되는가요? 19
2. 혁신인재 양성사업 산업·사회문제 분야(bottom-up)의 평가 패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19
3. 선정평가 지표 중 산학협력 영역에서 공공부문 또는 지자체 등과 협력한 실적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19

IV. 대학원 혁신지원

가. 대학원 혁신지원비

1.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도입 취지는 무엇입니까? 20
2.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20
3.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전국과 지역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
4. 학교당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규모는 및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

나. 대학원 혁신지표

1. 선정평가 시 대학원 혁신영역은 평가지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2
2. 선정평가 시 대학원 혁신영역은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됩니까? 22
3. 선정 후 대학원 혁신 지표 및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매년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됩니까? 22
4. 연합 교육연구단의 경우 대학원 혁신지표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게 됩니까? 22

가. 지원 분야

1. 전국/지역을 구분하여 신청 및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지역 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학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역 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학은 인가받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며, 지역소재 대학은 전국공모 및 지역공모 중 한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과학기술원(KAIST, DGIST, GIST, UNIST) 및 포항공과대학교는 전국 분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본교와 분교는 별도로 교육연구단(팀)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교는 전국, 지역 중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본교와 분교가 별개로 대학원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교와 분교가 각각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분교는 지역대학 분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타 부처의 대학원 대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부(과)는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나요?

⇒ 타 부처 대학원 대상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4단계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육연구단(팀)과 4단계 BK21 사업 지원대학원생 간 조교·연구원 업무 관련 협약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해야 하나요?

⇒ 교육연구단(팀)과 조교·연구원으로 일하게 되는 지원대학원생 간 업무 기간 및 장소, 업무 내용, 지원 연구장학금 규모 및 인권·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신청 요건

1. 사업 신청일 이전에 대학원 학과(부)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까?

⇒ 사업 신청일 이전에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시작일('20.9.1) 까지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선정 시 박사학위 과정생 충원 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2.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나, 특수대학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박사학위과정 없이, 석사학위과정만 운영 중인 학과(부)도 4단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부)는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등록된 박사학위 과정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박사학위 과정생이 없는 신설(예정)학과(부)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 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4. 교육연구단(팀) 참여 교수의 기준은 무엇이며, 대학 내 연구전담교수, 기금교수도 포함됩니까?

⇒ 교육연구단(팀)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이어야 하며, 제14조 제2항에 의한 강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구전담교수나 교육 및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는 교수도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로 인정될 수 있고, 참여교수인 경우에는 모수에 포함됩니다.

국·공립대학의 기금교수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계약교원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연구단(팀) 참여교수가 사업기간 동안 교체될 수 있습니까? 또한 사업 기간 내 정년퇴직 예정자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참여교수의 퇴직, 휴직 등의 신분 변동을 반영하고, 참여교수 간 경쟁촉진을 위해 사업 참여교수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동 사항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참여교수 변경 시, 사업 신청 당시의 전체 참여교수 수보다 줄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기간 내 정년퇴직 예정자는 퇴직 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말 정년퇴직 예정인 교수도 사업신청 시 학과(부) 전체교수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4단계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자에는 사업신청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수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비참여 교수로 변경 불가능). 이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휴직이나 연구년 중인 교수도 교육연구단(팀)에 참여교수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 휴직인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업 참여 교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년 중인 경우에는 지도학생이 있고, 실제 학생 논문지도 등의 활동을 하여 교육연구단(팀)에서 인정하는 경우 참여교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는 반드시 전임발령이 필요합니까?

⇒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과(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학부 소속 교수의 대학원 전임 발령이 불필요하나, 다른 경우에는 신청요건인 참여교수 비율 산정에 필요한 모수 등을 판단하기 위해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발령이 필요합니다.

단,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타 학과 전임교수로서 교육연구단에 신청하는 학과의 겸임(또는 겸무)하는 교수도 참여가 가능하며, 타 학과 소속 교수들과 협동과정, 융합전공 등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 4단계 BK21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한(연구과제 책임자 3개, 공동연구자 5개(3책5공))에 포함됩니까?

⇒ 4단계 BK21 사업은 인력양성이 주목적인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한(3책5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교육연구단(팀)장을 겸할 수 없는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SRC, ERC, MRC, CRC, RLRC, IBS 등)의 책임자 또는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는 교육연구단(팀)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10. 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요건은 신청일 현재 석·박사 과정 등록생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생은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과정생(또는 박사과정수료생)은 입학 후 4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입학 후 6년 이내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단, 군복무 및 휴학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 학과(부) 내에 공동 지도교수가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공동 지도교수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지도학생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의 소속 학과(부)가 다를 경우, 학생이 소속된 신청 단위의 지도교수가 참여한다면 해당 학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 교원 소속 변경 및 신입교원 임용일자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 교원의 소속 변경 및 신입교원 임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신청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로 소속 변경 및 임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설예정학과의 경우, 신설시점에 교원의 소속이 신설예정학과로 변경될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지원 내용

1. 4단계 사업 참여 대학원생 수 및 지원 대학원생 수는 어떻게 결정되니까?

⇒ 사업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신청 단위 소속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체 학생을 말합니다(단, 등록학기 기준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사통합 6년을 경과하지 않은 학생). 지원대학원생 수는 과학기술 분야는 참여 대학원생의 70% 이내, 인문사회 분야는 참여교수 1인당 석사과정생 2명, 박사과정생 1명 이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 교육연구단(팀) 지원대학원생의 석·박사과정생 구성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 교육연구단(팀) 지원대학원생 중 석·박사과정생 구성은 교육연구단 전체 사업비 중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간접비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 모든 유형에서 간접비는 국고지원금의 5% 이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이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과기원의 경우 간접비는 2%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 4단계 사업에서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채용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5. 이미 정부 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과학기술원(KAIST, DGIST, GIST, UNIST)과 같이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등록금 등 학비 지원을 받는 대학은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을 제외하고 지원하며, 1번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전체 사업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6. 참여 대학원생 중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석·박사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 4학기 이내인 경우는 석사과정생으로, 5학기 이상인 경우에는 박사과정생으로 구분됩니다.

7. 학·석사 연계과정에 참여 중인 학부생도 참여 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까?

⇒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도 참여 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신분이 학칙에서 정한 석사과정생일 경우, 참여대학원생 모수에 포함되고,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수료생이 교육연구단(팀)의 참여 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까?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수료생이 참여 대학원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사통합 6년 이내에서 연구생 등록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졸업종합시험 또는 학위논문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생 등록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선정 이후 해당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선정 평가

1. 참여교수의 연구업적물 평가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 연구업적물 평가는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정성평가, 70%)와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평가(정량평가, 30%)로 구성됩니다.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는 참여 교수의 최근 5년간 대표 업적물 3건(수학, 통계, 인문사회 분야는 2건)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평가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참여교수의 최근 5년간 환산 논문 편수, 환산 보정 피인용수(FWCI), 환산 보정 IF·ES를 평가 하게 되며,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환산 논문(저서) 편수를 평가합니다.

2. 대표 연구업적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참여교수가 전공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산출한 업적물을 말하며, 구체적인 종류와 인정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 분야	업적물 종류	인정기간
기초과학, 응용과학	저널논문	5년
전기전자, 컴퓨터	저널논문, 학술대회논문	5년
건축	저널논문, 저서, book chapter, 설계작품	5년
디자인/영상	저널논문, 저서, book chapter, 창작 전시작품, 수상	5년
인문, 사회, 간호, 보건, 체육	저널논문, 저서, book chapter	5년

저널논문의 경우,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논문 중 참여 교수의 신청분야 관련 저명 SCI(E) 저널, SSCI 저널, A&HCI 저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타 국제학술지를 포함합니다. 단, 저자의 순서가 알파벳 순서인 학문분야는 주저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3.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참여교수별로 최근 5년간(2015.1-2019.12) 대표 연구업적물 3건에 대해서 논문의 창의성, 혁신성, 교육연구단(팀)의 비전 및 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전공 분야에서 기여 등을 5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제출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패널에서 평가합니다. 대표 연구업적물이 논문인 경우, 논문의 피인용수, 게재 저널의 IF, ES 등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참여교수 전체 논문 평가 관련, “참여교수 1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 합”과 “논문 1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란 어떻게 산출합니까?

⇒ 총 환산보정 피인용수 합은 “개별 논문의 보정 피인용수(FWCI) × 개별 논문의 환산 편수”의 총합으로 구합니다.

논문 1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는 환산보정 피인용수 합을 보정 피인용수 값이 있는 논문의 총 편수로 나눈 값이며, 참여교수 1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 합은 환산보정 피인용수 합을 참여교수 수로 나눈 값입니다.

단, 피인용수의 경우 2019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5.1.1. ~ 2018.12.31.까지의 논문에 대해 평가합니다.

5. 교수 연구업적 평가 중 “논문 편수 환산 기준” 및 “보정 IF”는 BK21 플러스 사업과 다른가요?

⇒ BK21 플러스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① 논문 편수 환산 공식

과학기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min(1/(m+0.5), 0.5)$ (단, n=0일 때는 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수 - n: 기타저자(주저자를 제외한 저자) 수 - T: 총 저자 수 (= m + n) ▶ 기타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n>0) = $\{1 - m * \min(1/(m+0.5), 0.5)\} / n$ ▶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주저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알파벳 순서로 저자 순서를 정하는 경우, 각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는 1/T로 한다. ▶ 기타(논문 상에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함) 가.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시

- 교신저자임을 알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 상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나. 교신저자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저자로 간주함.

<수학분야 및 거대과학실험분야>

- ▶ 수학분야와 거대과학실험분야는 주저자가 논문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는 1/T(수학), 1/Y(거대과학실험)로 한다.

<거대과학실험분야>

- 정의: 참여국이 3개국 이상, 참여기관이 10개 이상, 저자수가 30인 이상인 논문 분야
- 거대과학실험분야 논문환산편수
 - (총저자수: 환산저자수) = (T:Y)
 - T<1000일 때: $Y=30+70/970*(T-30)$ --> (30,30)과 (1000,100)을 연결한 직선
 - $T \geq 1000$ 일 때: $Y=100$

인문사회 분야

1. 주저자 표기가 있는 경우(저널논문만 해당)

- ▶ 주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min(1/(m+0.5), 0.5)$
(단, n=0일 때는 1/m)
- m: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수
- n: 기타저자(주저자를 제외한 저자) 수
- T: 총 저자 수 (= m + n)
- ▶ 기타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n>0$) = $\{1 - m \cdot \min(1/(m+0.5), 0.5)\} / n$
- ▶ 저널별 가중치(P)
-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P=1
-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P=3
- 기타국제학술지: P=1
- ▶ 예외조항
- 단,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주저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알파벳 순서로 저자 순서를 정하는 경우, 각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는 P/T로 한다
- 단, 학술저서의 경우 P=2(국어), 3(외국어) 으로 하고 P/T 공식 사용(T는 총 저자 수)
- ▶ 기타
- 가.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제출
 - 교신저자임을 알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 상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나. 교신저자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저자로 간주함.

2. 주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 (저널논문 및 저서)

- ▶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P/T
- T: 총 저자 수
- P: 저널별 가중치
- ▶ 저널(학술저서)별 가중치(P)
-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P=3
- 기타국제학술지: P=1
-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P=1
- 학술저서(국어): P=3
- 학술저서(외국어): P=5
- ▶ 학술저서 신간/개정 가중치(S)
- 학술저서(신간): S=1
- 학술저서(개정판): S=0.3

② 보정 IF

보정 IF 정의 및 예시

- Thomson JCR(2018년 기준)에 따르면 236개의 category가 있고, 19273개의 SCI(E) 저널이 있음.
 - 각 category별 IF 분포는 매우 다르며, 학문분야 별 IF값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정절차를 거친 후 보정 지수적용
 - (1) 각 category별 IF값이 높은 top 20% 저널의 IF의 평균을 구함
 - (2) 각 category에 속해 있는 저널의 IF값을 (1)에서 구한 Top 20% IF 평균값으로 나누며, 이 값을 저널의 보정 IF라고 함. 단, 한 개의 저널이 여러 개의 category에 속해 있어 다수의 보정 지수를 가질 때는 그 중 최대값을 선택함
- <보정방법 예시>

Category	Abbreviated Journal Title	Impact Factor	Top 20% IF 평균	보정 IF
Acoustics	ACOUST AUST	0.630	4.522	0.139
Acoustics	ACOUST PHYS+	0.860	4.522	0.190
Acoustics	APPL ACOUST	2.297	4.522	0.508

Category	Abbreviated Journal Title	Impact Factor	Top 20% IF 평균	보정 IF
Meteorology & Atmospheric Sciences	AEROSOL SCI TECH	2.435	6.358	0.383
Environmental Sciences	AEROSOL SCI TECH	2.435	6.921	0.352
Engineering, Mechanical	AEROSOL SCI TECH	2.435	5.148	0.473
Engineering, Chemical	AEROSOL SCI TECH	2.435	7.467	0.326

6. 전국 공모와 지역 공모는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하게 되나요?

⇒ 전국/지역 공모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합니다. 단, 평가 지표별로 전국/지역 공모에 따라 평가 착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평가 시, 지역 공모에 신청한 교육연구단(팀)은 지역 산업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7. 신입교수의 연구실적은 어떻게 인정됩니다까?

⇒ 신입교수는 2017년 1학기 이후 국내 대학에 전임교원(기금교수 포함) 이상의 직위에 최초 임용된 교원으로서, 신입교수의 연구실적 중 대표 연구업적물과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다른 교수들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연구비 수주 실적 산정 시에는 신입교수를 모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포함시킬 경우에는 일부의 신입교수만 포함시킬 수 없으며, 전체 신입교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8.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은 어떠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까?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현황 및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9.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을 받은 경우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대학재정장학과, '18.7)」에 따라 대학이 부정·비리로 인해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결과에 따라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의한 행정처분,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금고 이상의 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선정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해당 매뉴얼 개정 시 개정 매뉴얼에 따라 적용 예정입니다.

10.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가 정량지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나요?

⇒ 정성적인 지표가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의 평가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마. 기타

1. 3단계 사업 수혜학과가 4단계 사업 신청을 위해 3단계 사업 종료 이전 학과를 개편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 3단계 사업의 수혜를 위해서는 3단계 사업의 종료 시까지 학과를 유지하여,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사업단 지원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II 미래인재 양성사업

가. 지원 분야

1. 한 학과(부) 내에서 세부사업 유형 간 또는 세부 분야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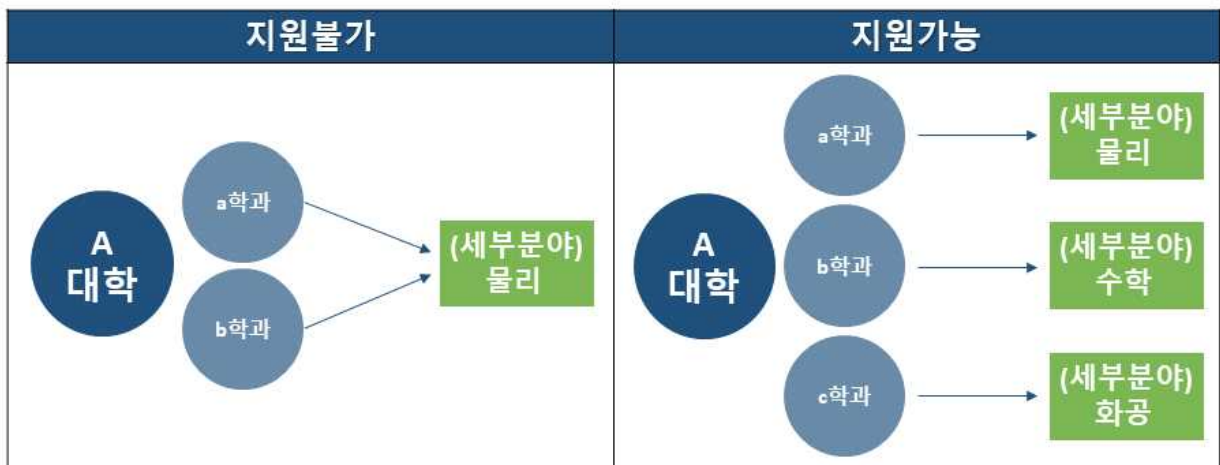
⇒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팀을 신청한 학과의 비참여 교수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혁신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을 신청한 학과의 비참여교수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팀 참여가 불가합니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하나의 학과에서는 1개의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팀만 신청이 가능하며, 과학기술분야 교육연구단의 경우 각 세부 분야별로 대학별 1개의 교육연구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3단계 사업에서와 같이 한 학과(부)에서 2개의 교육연구팀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한 대학에서는 세부분야 별로 1개의 팀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하나의 학과(부)에서는 1개의 교육연구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연구팀은 세부 분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학별 제한 조건은 없으나, 한 학과(부) 당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분야> 기초과학/응용과학(교육연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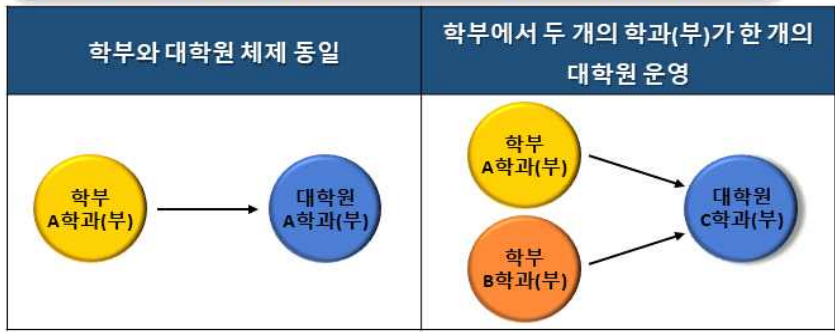
<인문사회분야 등> 인문학/사회과학/중점응용 분야 교육연구단 및 전체 교육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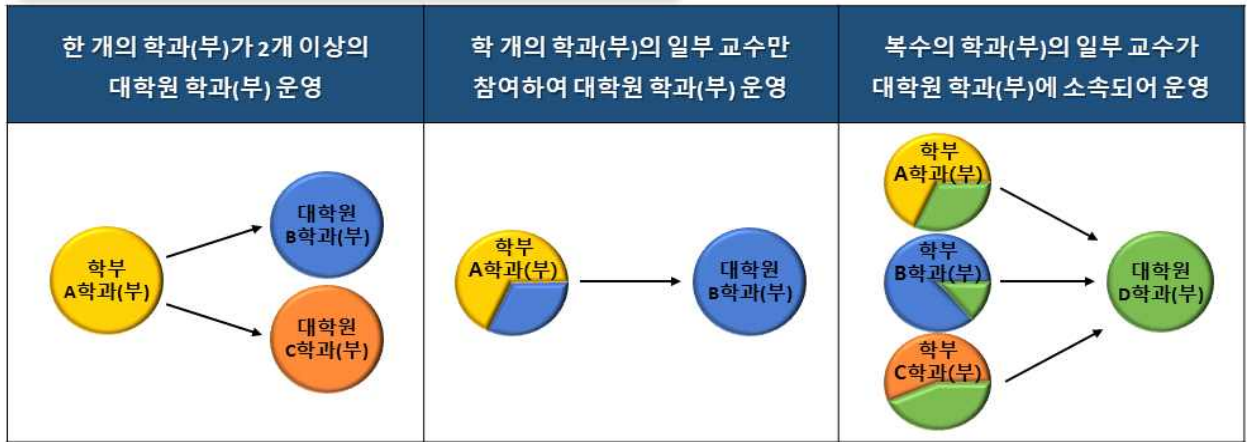
3.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는 당해 대학원 학과(부)가 개설된 학부과정의 학과(부) 소속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으면서 해당 대학원 학과(부)를 전담하는 경우 또는 해당 대학원 학과 전임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대학원 소속 전임 발령이 필요 없으며, 학부 교원 전원이 모수



대학원 전임 발령 필요(대학원 전임 발령 기준이 모수)



나. 신청 요건

1.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부)만 신청단위가 됩니까? 전공 단위는 신청할 수 없습니까?

⇒ 미래인재 양성사업의 신청단위는 신청 세부분야 해당 단일학과(부)로 이루어진 대학원, 대학원 내 단일학과(부), 학과(부) 내 전공은 대학원생 모집정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융합전공이나 협동과정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의·치·한의학 분야에 임상교수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 사업 신청을 하는 학과(부)에 전임교수로 소속되어 있고, 기초 의과학자 육성을 목적으로 학술편역 과정의 전일제 대학원생을 지도학생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연구단 구성 시 학과 교수의 70% 이상 참여 조건은 기초 교수를 기준으로 하며, 임상교수 참여교수 수는 기초교수 참여교수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초·임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임상 교수로 간주합니다.)

3.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지도교수가 임상교수인 학생의 참여에 비율 제한이 있습니까?

⇒ 사업 참여 임상교수 지도 학생의 경우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 대학원생 중 임상교수 지도학생의 비율은 참여교수 중 임상교수 참여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교육연구단 구성 시 신입교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까?

⇒ 미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신입교수를 적극 지원하고, 신입교수가 교육연구단 구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참여 교육연구단 학과(부)에 “신입교수”(2017년 1학기 이후 국내 대학에 전임교수(기금교수 포함) 이상으로 최초로 임용된 교수)가 있을 경우에는 신입교수의 70% 이상(신입교수 전체 수 x 70% 한 이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연구팀의 경우에는 동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입교수의 연구실적 관련 내용은 9p 7번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 내용

1. 교육연구단(팀) 국고지원비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합니까?

⇒ 교육연구단(팀) 지원 상한액과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팀) 특성과 전략에 맞게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장학금은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인문·사회분야,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와 교육연구팀 전 분야의 경우는 연구장학금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의·치·한의학 분야 포함) 교육연구단 및 팀은 참여 학생의 70% 이내, 인문·사회분야 교육연구단 및 팀은 참여교수 1인당 석사 2명, 박사(수료) 1명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연구단(팀) 운영비는 연간 사업비의 10% 이내(또는 3,000만원 이내)가 되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산출방법 예시〉

① 미래인재 양성사업 과학기술 분야 / 중점응용 분야

- 참여교수 전체 지도학생이 석사과정생 100명, 박사과정생(수료전) 80명, 박사수료생 20명인 교육연구단의 경우
 - 참여교수 전체 지도학생의 70% 내에서 지원 대학원생 수 및 연구장학금 산정
 - 석사과정생 100명×70%×70만원×12개월 + 박사과정생(수료전) 80명×70%×130만원×12개월 + 박사수료생 20명×70%×100만원×12개월 = 1,629.6백만원
 - 위 금액이 연간 사업비의 6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
- ⇒ 1,629.6백만원 × (100% / 60%) = 2,716백만원 (해당 금액 이내로 신청)
- ※ 의·치·한·간호의 경우에는 × (100% / 50%) 적용

② 미래인재 양성사업 인문사회분야

- 참여교수가 10명인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 8명은 박사과정생 각 1명, 참여교수 2명은 박사수료생 각 1명을 지원학생으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석사생 2명은 공통)
 - 교수 1인당 석사생 2명, 박사(수료)생 1명 내에서 지원 대학원생 수 및 연구장학금 산정
 - 석사생 2명×참여교수 10명×70만원×12개월 + 박사수료생 1명×참여교수 2명×100만원×12개월 + 박사생 1명×참여교수 8명×130만원×12개월 = 316.8백만원
 - 위 금액이 연간 사업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
- ⇒ 316.8백만원 × (100% / 50%) = 633.6백만원 (해당 금액 이내로 신청)

라. 선정 평가

1. 미래인재 양성사업 인문사회 분야 및 교육연구팀 전 분야의 경우, 세부 분야 및 학문 분야는 예시로, 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 평가패널 구성하는 방식 (bottom-up)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패널이 구성되는가요?

⇒ 사업 신청 시 신청하는 교육연구단의 학문분야와 가장 가까운 분야를 한국연구재단 학문연구분야 분류표의 중분야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면, 이후 분야별 신청현황에 따라 평가 패널을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 학과의 일부 교수들만 참여하는 교육연구팀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단계 사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대학원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교육연구팀의 경우, 소속 학과 전체는 어렵더라도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의 분야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의·치·한의학 분야 임상교수도 선정평가 시 평가를 받나요?

⇒ 기초교수와 동일한 기준에서 교육역량 영역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4. 교육연구팀의 경우에도 대면평가가 존재하나요?

⇒ 교육연구팀의 경우에는 대면평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Ⅲ 혁신인재 양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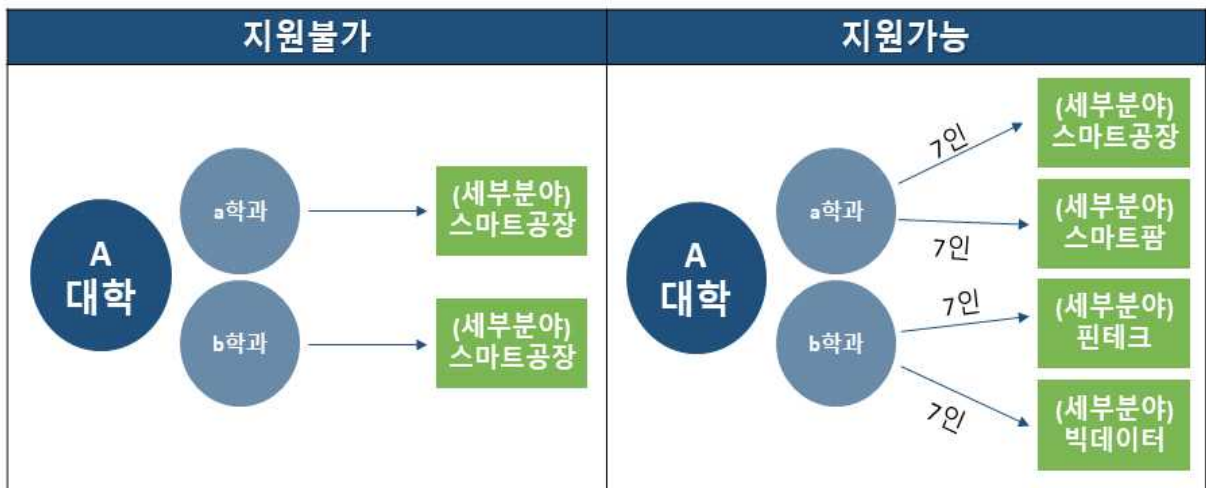
가. 지원 분야

1. 한 학과(부) 내에서 세부사업 유형 간 또는 세부 분야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한 학과에서 7인 이상의 교육연구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학과는 최대 2개 세부 분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연구단에 소속되지 않은 학과 소속 교수 중 일부(7인 미만)는 타 학과에서 신청하는 다른 세부 분야 교육연구단에 겸임교수로 소속되어 신청하거나, 타 학과 소속 교수들과 협동과정, 융합전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다른 세부 분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산업분야는 각 세부 분야별로 대학별 1개 교육연구단만 신청 가능합니다.

<혁신인재 양성사업>



2. 산업·사회 문제 해결분야의 경우, 한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는 교육연구단 수는 대학원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때 대학원 재학생 수 기준은 무엇인지?

⇒ 혁신인재 양성사업 산업·사회문제해결 분야의 경우,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학생수 4,000명 이상이면 6개, 2,000명 이상이면 4개, 2,000명 미만이면 3개까지 교육연구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산업분야의 “인공지능”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한정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의미합니까?

⇒ 인공지능의 핵심분야인 학습, 인지, (시각, 음성), 언어에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미합니다.

4. 신산업분야의 “바이오헬스/혁신신약” 분야와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는 각각 어떤 분야를 의미하며, 두 분야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 바이오헬스/혁신신약 분야와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헬스/혁신신약 분야는 희귀, 난치질환 등의 극복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화학적 합성물 혹은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그 제조를 위해 신규 표적을 발굴하는 기술 및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는 개인이나 인구집단의 맞춤형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등을 위한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분야로서 보건의료 기관 등에 의해 수행되는 건강관련 종합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요건

1.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부)만 신청단위가 됩니까? 전공 단위는 신청할 수 없습니까?

⇒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신청단위는 융·복합 학문 성격을 지닌 단일학과(부)로 이루어진 대학원, 대학원 내 단일학과(부)이며, 협동과정 또는 융합전공, 또는 학과(부) 내 대학원생 모집정원이 분리된 전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간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융합전공을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 연구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청 및 지원단위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인 성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 신산업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를 선도할 융·복합적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단일 학문 분야의 경우에도 융·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사회문제 해결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 상 2개 이상의 중분류(이질적 성격)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교육연구단 구성 시 신입교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에는 신입교수 포함 의무가 없습니다.

4. 융합전공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신청 단위 중, 학과와 협동과정은 학사단위를 구성하는 대학원생 모집정원이 별도로 있는 반면, 융합전공의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정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융합전공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교육연구단의 경우, 참여교수 지도 학생이면서 융합전공 교과과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학생만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다.

5. 대학 간 연합 교육연구단의 경우 지역의 제한은 없나요? 또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영역에서의 가점이 부여되나요?

⇒ 대학 간 연합 교육연구단의 경우 별도의 지역 제한은 없으며, 주관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주관대학은 교육연구단장이 속해있으며, 참여교수의 50%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학 간 연합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선정평가 시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항목에서 일정정도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6. 산업·사회문제 분야의 교육연구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각 세부 분야(인문사회융복합, 과학기술융복합, 인문사회과학기술융복합)는 어떻게 다릅니까?

⇒ 사회문제 또는 산업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교육연구단을 구성하면 됩니다. 인문사회 융복합은 산업·사회 문제 중심 융복합, 과학기술분야 융복합은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연결한 융복합, 인문사회과학기술 융복합은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을 연결한 융복합이라는 면에서 구분됩니다.

7.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에도 임상교수 참여 제한이 있나요?

⇒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참여 임상교수 수는 참여 기초교수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상교수만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임상 겸직인 경우 '임상'으로 간주함)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역량과 연구역량은 기초교수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다. 지원 내용

1. 교육연구단 국고지원비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합니까?

⇒ 교육연구단 지원 상한액과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 특성과 전략에 맞게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단, 신산업분야의 경우 연구장학금은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산업·사회문제 해결분야는 50%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연간 사업비의 10% 이내(또는 3,000만원 이내)가 되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비 산출방법 예시〉

① 신산업분야

- 참여교수 전체 지도학생이 석사과정생 50명, 박사과정생(수료전) 40명, 박사수료생 10명인 교육연구단의 경우
 - 참여교수 전체 지도학생의 70% 내에서 지원 대학원생 수 및 연구장학금 산정
 - 석사과정생 50명×70%×70만원×12개월 + 박사과정생(수료전) 40명×70%×130만원×12개월 + 박사수료생 10명×70%×100만원×12개월 = 814.8백만원
 - 위 금액이 연간 사업비의 6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
- ⇒ 814.8백만원 × (100% / 60%) = 1,358백만원 (해당 금액 이내로 신청)

② 산업·사회문제 해결 분야

- 참여교수 전체 지도학생이 석사과정생 50명, 박사과정생(수료전) 40명, 박사수료생 10명인 교육연구단의 경우
 - 참여교수 전체 지도학생의 70% 내에서 지원 대학원생 수 및 연구장학금 산정
 - 석사과정생 50명×70%×70만원×12개월 + 박사과정생(수료전) 40명×70%×130만원×12개월 + 박사수료생 10명×70%×100만원×12개월 = 814.8백만원
 - 위 금액이 연간 사업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
- ⇒ 814.8백만원 × (100% / 50%) = 1,629백만원 (해당 금액 이내로 신청)

2. 대학원 재학생이 없는 신설 학과 혹은 융합전공 등의 경우, 연차가 증가하면서 대학원생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연구장학금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설학과 등의 사업 지원 예산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 신설된 학과 또는 융합전공으로서 향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학원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차 연도에는 연구장학금을 전체 사업비의 50%(사업비 등 50% 이하)이상으로 편성하며, 2차 연도에는 60% 이상(사업비 등 40% 이하)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라. 선정 평가

1. 혁신인재 양성사업 산업·사회문제 분야의 경우 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 평가패널 구성하는 방식(bottom-up)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패널이 구성되는가요?

⇒ 인문사회융복합, 과학기술융복합, 인문사회과학기술융복합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된 분야 내에서 평가합니다. 다만 선택된 분야의 신청 교육연구단 수가 적을 경우 다른 분야와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혁신인재 양성사업 산업·사회문제 분야의 평가 패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교육연구단에서 산업문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주제, 중점 교육 및 연구 분야와 참여교수의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패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3. 신산업분야 선정평가 지표 중 산학협력 영역에서 지자체 등과 협력한 실적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예. 산학협력 영역에서는 국내외 산업체와의 연계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연계 실적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 대학원 혁신지원비

1.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도입 취지는 무엇입니까?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학원 본부 차원의 제도 개혁을 지원하며, 기존 사업단 기반 사업 운영에 따른 학문 분야 간 분절 현상을 극복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제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대학원 학사관리 강화, 연구방법론 및 공통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과·전공 간 융합연구 추진 및 관련 전공 개발·운영, 대학 차원의 RA/TA 제도 운영 등 대학원 교육 개선과,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대학 내 체제 개편,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구 등 대학원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추후 구체적인 대학원 혁신지원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전국과 지역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3단계 사업에서의 지역대학 지원 비율 이상으로 대학원 혁신지원비에서도 지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학교당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일정 수 이상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대해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및 지원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지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우선 1차로 교육연구단이 5개 이상 선정된 대학에 대해 교육연구단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단, 교육연구팀 및 대학 간 연합 교육연구단 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차로 지원하고 남은 예산을 각 대학별 교육연구단 사업비 총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방식 >

- 1차 산정
 - (5~9개) 5억원 / (10~14개) 8.75억원 / (15~19개) 11.25억원 / (20개 이상) 12.5억원
 - ※ 상기 교육연구단 수 및 지원액은 선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차 산정
 - 대학별 배분액은 조정계수 Y*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2단계 지원액은 ‘각 대학이 지원받는 총액 x Y값’
 - * $Y = (529\text{억원} - 1\text{단계 배분액}) / 5\text{개 이상 선정된 대학의 지원금 총액}$
- 대학별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총액
 - 1차 지원액 + 2차 지원액

< 예시 >

- 교육연구단 5개 이상 선정 대학이 23개교라고 가정 시, 1차 배분 총액은 212.5억원이며, 2차 배분 총액은 316.5억원

교육연구단 수	학교 수(가정)	교당 지원액	소요예산
5~9	5교	5억원	25억원
10~14	8교	8.75억원	70억원
15~19	6교	11.25억원	67.5억원
20 이상	4교	12.5억원	50억원
계	23개교	-	212.5억원

- 교육연구단 5개 이상 선정 대학의 교육연구단 지원금 총액이 2,600억이며, A대학의 경우 13개 교육연구단 선정, 사업비 100억 지원이라고 가정 시,
 - $Y = 316.5 / 2,600 = 0.12173$ 이며, A대학이 지원받는 2차 대학원 혁신 지원비는 $100\text{억} \times Y = 12.173\text{억}$
 - A대학의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1차 8.75억 + 2차 12.173억 = 20.923억

나. 대학원 혁신지표

1. 선정평가 시 대학원 혁신영역은 평가지표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대학원 혁신영역은 대학의 목표와 전략, 교육·연구체제 구축, 학술연구 지원 및 환경개선, 교육연구단 지원, 예산집행과 성과관리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선정평가 시 대학원 혁신 영역은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됩니까?

⇒ 대학원 혁신영역은 교육연구단(팀)이 아니라 대학 본부에서 작성하여 평가 받아야 하며, 개별 교육연구단이 아닌 총장 또는 부총장 등 총장단 및 대학원장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가 존재합니다.

해당 대학원 혁신지원 영역의 평가 결과는 교육연구단(팀)의 평가 점수로 반영되며, 교육연구단의 경우는 400점 만점에 100점, 교육연구팀의 경우는 350점 만점에 50점이 혁신지표 평가 점수로 반영됩니다.(교육연구팀의 경우, 100점 기준으로 평가받은 결과를 5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

3. 선정 후 대학원 혁신지표 및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어떻게 매년 평가받게 됩니까?

⇒ 매년 대학원 혁신 평가 영역 지표 별로 각 대학에서 제시한 7년 뒤의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하게 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원 혁신 지원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20%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A대학은 $\times 1.2$, B대학은 $\times 1.0$, C대학은 $\times 0.8$ 로 차등 지원 할 예정입니다.

4. 연합 교육연구단의 경우 대학원 혁신 지표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게 됩니까?

⇒ 각 대학이 받은 대학원 혁신 영역 점수를 참여 교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받습니다.